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11 부동산매매계약취소 확인

원 고 A

피 고 1. [redacted]국

2. [redacted]군수

소송대리인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5. 7. 5. 원고와 B 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redacted]지방법원 등기국 2005. 7. 7. 접수 제57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1) [redacted]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28

17125 판결, (2) [redacted]고등법원 2006나84203 사건 2007. 7. 9.자 조정조서에 기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라.

2.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1. 11. 8. 원고 명의로 [redacted]고등법원 2006나84203 사건 2007. 7. 9.자 조정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환원된 소유권에 대하여 [redacted]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합14043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재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증거에 기하여 사실을 확인하라.

3.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redacted]고등법원 2006나84203 사건 2007. 7. 9.자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와 B 간의 "재매입한 사실이 없는" [redacted] 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합14043 판결에 기하여 인정한 사실에 기하여, 피고 [redacted]국은 2005. 7. 5. 매매계약을 인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의신청을 고의로 누락, 미필적 고의에 기한 2010. 9. 1.자 위법한 무신고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부과처분[1](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redacted]군수는 위법한 2014. 11. 25.자 지방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법한 2016. 5. 16.자 이중 지방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지방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그 자체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아래에서는 원고가 영동세무서의 2010. 9. 1.자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28

원고는 2005. 7. 5.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7. 7.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원고는 2005. 9. 1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B를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 2005가합17125 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8. 17.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항소심[[redacted]고등법원 2006나84203(본소), 2006나84210(반소)]에 이르러 원고와 B 사이에 2007. 7. 9.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B는 2011.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redacted]세무서장과 피고 [redacted]군수는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지방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 및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재매입한 바 없다는 사실을 각 확인할 것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지방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28

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거나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재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edacted]세무서장이나 피고 [redacted]군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지방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라면, 행정처분인 위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원고가 그와 별도로 민사상 확인의 소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의 확인이나 이 사건 아파트를 재매입한 바 없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에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된 사실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재매입한 바 없다는 사실의 각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각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28

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 제55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본문, 제89조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redacted]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피고 [redacted]군수의 이 사건 각 지방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28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28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구 C, D, E, F에 있는 G아파트 H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

지층 742.32㎡

1층 773.77㎡

2 내지 18층 각 746.8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redacted]구 C 대 801㎡

2. D 대 97256㎡

3. E 대 61㎡

4. F 대 2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I호 철근콘크리트조 164.85㎡

(대지권의 표시)

1, 2, 3, 4. 소유권대지권 98356분의 80.202. 끝.